

# 알고리즘 편집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박아란 · 언론학 박사, 「언론중재」 편집위원

“뉴스 망에 걸린 다양한 사건들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 속에서 편집자들은 교섭을 통해 계속적으로 판단의 기준을 만들고 또 고쳐나간다. 뉴스 가치의 판단 활동을 통해, 이번에는 편집자들이 사회적 질서와 일관성을 부여하는 틀로서 뉴스 망 구성요소로서의 기자나 통신원들이 타당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긍정하고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게이 터크만,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 1978)

11년간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뉴스 제작진이 현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해 나가는가를 관찰한 터크만은 저서 『메이킹 뉴스』에서 뉴스 제작진들이 일종의 틀을 가지고 뉴스를 제작하고 그 틀에 따라 뉴스의 내용이 윤색됨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뉴스의 제작과정은 현장에서 기자가 취재해 마감시간에 맞춰 작성한 기사를 데스크가 선별하고, 전문편집자가 적절한 제목을 달고 편집하여 뉴스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 생산과정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저널리즘 영역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 저널리즘(algorithm journalism)’이다.

## 뉴스와 알고리즘 저널리즘

알고리즘이란 어떤 값이나 값의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 다른 값이나 값의 집합을 출력하는 잘

정의된 계산 절차를 말하며, 알고리즘은 주어진 입력을 논리적으로 처리해 유효한 결과 값을 만들도록 설계된다.<sup>1)</sup> 이러한 알고리즘이 저널리즘 영역에서 구현된 ‘알고리즘 저널리즘’이란 저널리즘 행위과정 전반에서 컴퓨팅 기술에 의한 알고리즘이 개입되는 것을 말한다. 즉 뉴스의 취재, 작성, 편집 등 저널리즘 행위 과정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로봇 저널리즘(robot journalism)’으로 불리기도 한다.<sup>2)</sup>

알고리즘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뉴스 클러스터링(news clustering)’이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뉴스들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비슷한 뉴스끼리 자동으로 묶어서 중요한 주제를 찾아내는 방식을 뜻하며, 이러한 클러스터링 방식은 ‘어뷰징(abusing)’을 배제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카카오가 개발한 ‘루빅스(RUBICS: Realtime User Behavior-based Interactive Content recommender System)’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링을 통해 뉴스를 자동으로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의 루빅스 도입 이전에는 에디터들이 뉴스 카테고리 별로 분담해서 편집원칙에 따라 기사를 다음의 메인 화면에 직접 배치했다. 그러나 반응형 콘텐츠 추천시스템인 루빅스를 도입한 이후에는 (1) 클러스터 분석 후 (2) 문서간 중복/어뷰징 필터링을 한 번 더 적용하고, (3) 편집원칙에 반하는 문서가 없는지 최종 검수한 후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이미지 또는 기사를 가장한 광고들을 제거하고 남은 기사들을 루빅스 풀에 넣어서 모바일 뉴스 이용자 화면에 맞춤형으로 자동배열 되도록 하고 있다.<sup>3)</sup>

네이버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의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1) 우선 비슷한 뉴스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2) 비슷한 뉴스를 어떻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지, (3) 묶은 그룹 안에서 톱기사는 어떻게 결정할지이다. (1), (2)는 토픽 감지 및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3)은 랭킹 알고리즘이 담당하는데 네이버는 이러한 알고리즘에 어떤 요소가 반영되는지는 일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sup>4)</sup>



1) 김동한·이준환, 2015, “로봇 저널리즘: 알고리즘을 통한 스포츠 기사 자동 생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9-5호, 64-95쪽.  
 2) 김영주·오세욱·정재민, 2015, 『로봇 저널리즘: 가능성과 한계』(한국언론진흥재단).  
 3) 카카오, 2015. 9. 14, “맞춤형 추천뉴스 루빅스를 소개합니다”, <http://blog.kakaocorp.co.kr/412>(검색일: 2016. 3. 6.)  
 4) 『블로터』, 2015. 4. 6. 이성규, “네이버는 어떻게 낚시성 기사를 걸러낼까”, <http://www.bloter.net/archives/224545>(검색일: 2016. 3. 6.)

구글은 뉴스에 각각의 순위를 부여해 순위에 따라 뉴스를 배열하는 ‘뉴스 랭킹(news ranking)’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뉴스 랭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개하였는데, 그 13가지 요인은 언론사의 기사 생산량, 기사의 길이, 기사의 중요성, 기사의 속보성, 사용 패턴, 이용자 의견, 수용자와 트래픽, 뉴스 생산자 수, 뉴스 지국의 수, 기사에서 취재된 기관의 수, 뉴스의 범위, 국제적 열독 범위, 기사작성 스타일 등의 요소이다.<sup>5)</sup> 이러한 알고리즘 영향 요인을 고려해보면 구글 뉴스에서는 규모가 큰 전통적 언론매체가 생산한 기사가 뉴스 랭킹에서 보다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대표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은 2015년 5월부터 세계 350여개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제공하는 ‘인스턴트 아티클스(instant articles)’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페이스북은 인스턴트 아티클스 서비스를 위해 페이스북 서버 안에서 각 언론사의 신문 기사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인링크’ 방식을 채택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뉴스 큐레이션, 팟캐스트, 앱 뉴스,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형태의 뉴스 유통 수단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의 뉴스 선별 과정에 알고리즘이 개입되는 정도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언론으로서 기능하며 저널리즘 수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널리즘과 같이 공공영역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경우 비판적 연구영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sup>6)</sup> 그렇다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알고리즘의 적용이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 포털의 뉴스 편집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이전의 포털의 뉴스 편집 및 배치 기능과 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법원은 2008년과 2009년에 이미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네이버가 매개한 노컷뉴스 기사에 대해 네이버가 과연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sup>7)</sup> 서울고등법원은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이 언론매체의 핵심적 기능이라고 판단한 뒤, 네이버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고등법원의 판단에 의하

5) Google, 2012. 2. 28. "Systems and Methods for Improving the Ranking of News Articles". <https://www.google.com/patents/US8126876>(검색일: 2016. 3. 6.)

6) 오세욱, 2015.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의 만남: 알고리즘 필진성(verisimilitude)" 한국언론학회 2015년 봄철정기학술대회 발표문.

7)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면 (1) 당시 네이버는 100여개의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1만여 건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사 하단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공하여 단순히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보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도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2) 네이버는 언론사들이 전송하는 기사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배치하고 포괄적 표현 내지 글자 수 축소를 위해 기사 제목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3) 네이버가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기사를 게시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언론사들이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자신이 생산한 기사와 동등하게 게재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유사 취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네이버는 기사의 단순 전달자나 매개자가 아니라 ‘취재, 편집, 배포’라는 언론의 3가지 핵심기능을 갖춘 언론매체로서, 네이버가 다른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아 메인화면의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한 명예훼손적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이후 판결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자살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온라인 이용자들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해 포털이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2008년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등 포털사업자들이 원고와 관련된 기사에 제목을 붙이고 기사의 게재 여부, 위치 및 기간 등을 정하는 ‘유사 편집행위’를 하였으므로 언론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sup>8)</sup> 2009년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포털의 언론 해당여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포털이 뉴스 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그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sup>9)</sup> 따라서 포털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물론 직접적인 삭제 요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기술적, 경제적으로도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추후 차단할 주의의무가 발생하므로 상당한 기간 내 그러한 삭제 등의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있은 후 네이버는 메인 화면에 배치되는 기사 편집 방침을 대폭 수정하였다. 2009년 1월 네이버는 ‘뉴스 캐스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각의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기사를

8)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9) 대법원 2009. 4. 15. 선고 2008다53812 판결.

메인화면의 언론사별 편집박스에 배치하였다. 2013년 4월에는 ‘뉴스 스탠드’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이용자가 ‘마이 뉴스’를 설정하면 선택된 언론사의 주요 뉴스가 먼저 노출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설정한 ‘마이 뉴스’가 없는 경우에는 주요 언론사들의 로고가 우선 노출되며 기사보기 버튼을 눌러야만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4년 네이버는 뉴스 클러스터링 방식도 도입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선별 및 배치를 시도



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5년 루빅스 알고리즘을 도입한 이후에는 레이아웃상 글자 수 축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모바일 다음에 게시하는 뉴스의 제목을 극히 제한적으로 변경하고 있다.<sup>10)</sup>

이처럼 에디터가 개입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뉴스가 선별, 배치되는 경우의 포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이 판단한 바가 없다. 포털로서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음을 이유로 더 이상 편집 활동이 없으니 언론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구성에는 포털사업자의 가치기준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수하게 객관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포털이 알고리즘의 사용만을 근거로 기사의 배포나 발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뉴스 포털의 책임에 대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최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포털의 책임에 대해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판결은 2015년 6월 16일 내려진 *Delfi v. Estonia* 판결<sup>11)</sup>이며, 두 번째 판결은 2016년 2월 2일에 내려진 *MTE and Index.hu Zrt v.*

10) 카카오. 2015. 9. 9. “다음카카오의 뉴스 콘텐츠 노출방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http://blog.kakaocorp.co.kr/408>(검색일: 2016. 3. 6.)

11) *Delfi v. Estonia*, June 16, 2015, Application no. 64569/09. 이하 *Delfi* 판결.

Hungary 판결<sup>12)</sup>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Grand Chamber)<sup>13)</sup>에서 판결한 Delfi 사건은 2006년 1월 24일 에스토니아의 메이저 뉴스 포털인 Delfi의 웹사이트에서 발행된 SLK 선박회사를 비판하는 기사의 하단에 선박회사 대주주인 “L”에 대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댓글(가령 “L을 꼬챙이로 찢러버리자” 등의 댓글)이 덧붙여지면서 시작되었다. 기사와 댓글이 온라인에 발행된 지 6주 후, L의 변호사는 특히 공격적인 댓글 20개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Delfi는 삭제 요청이 있었던 날 그 댓글들을 온라인상에서 바로 지웠다. 그러나 L은 Delf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년 6월 에스토니아 대법원은 Delfi가 불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Delfi의 패소를 확정하였다. Delfi는 이러한 에스토니아 법원의 판결이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0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Delf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뉴스 포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뉴스 플랫폼의 경우, 혐오표현(hate speech)이나 즉각적 위협을 초래할 표현이 플랫폼에 게시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은 암시적이거나 은유적인 것이 아닌, 즉각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들이었는데 이렇게 위협한 표현들을 걸러내지 못하여 6주간 온라인에서 게시되도록 한 것은 Delfi 플랫폼의 필터링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통지를 받고 Delfi가 이를 즉각적으로 삭제한 것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Delfi는 댓글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당한 L에게 350 유로(한화 약 47만 원)를 배상하라”는 에스토니아 법원의 판결이 Delfi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Delfi 판결은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상업적 목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에만 적용이 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는 취미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나 블로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문제 삼은 표현은 명백하게 위법한 표

12) MTE(Magyarországi Tartalomszolgáltatók Egyesülete) and Index.hu Zrt v. Hungary, February 2, 2016, Application no. 22947/13. 이하 MTE 판결.

13) Grand chamber는 기존 선례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판단할 때, 선례 발전이나 선례 확립을 위한 원칙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이슈에 관한 사건일 때, 중요한 이슈에 관한 사건일 때, 관련 국가에 대한 함의가 큰 'high-profile' 사건을 다룰 때 등에 한하여 소집된다. ECHR, "Practice of the Grand Chamber Panel", [http://www.echr.coe.int/Documents/Note\\_GC\\_ENG.pdf](http://www.echr.coe.int/Documents/Note_GC_ENG.pdf)(검색일: 2016. 3. 6.)

현 즉 혐오표현이나 폭력행위를 자극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위법한 표현 전반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뉴스 포털의 법적 책임은 2016년 2월 MTE 판결에서 또다시 다루어졌다. 유럽인권재판소 제4부(Fourth Section)는 헝가리의 메이저 뉴스 포털회사인 Index.hu Zrt와 인터넷 자율심의기구인 MTE가 이용자 댓글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0년 MTE의 웹사이트와 Index.hu의 뉴스 포털이 어느 부동산 회사들의 기만적인 광고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신자, 익명의 이용자들이 그 회사들은 “교활(sly)”하며 “쓰레기(rubbish)”라는 등의 코멘트를 달면서 시작되었다. 부동산 회사들은 포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지 않고 헝가리 법원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MTE와 뉴스 포털은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문제가 된 표현을 바로 삭제하였다. 그러나 헝가리 법원은 이용자들의 댓글이 민법상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MTE와 뉴스 포털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원고의 소송비용을 포함한 제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뉴스 포털과 MTE는 헝가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Delfi 판결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뉴스 포털은 이용자들이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무와 책임(duties and responsibilities)’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전통적 발행인’의 책임과는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해 MTE 사건은 Delfi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Delfi 사건에서는 혐오표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으나 MTE 사건은 단순히 공격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MTE 사건은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표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기존의 선례를 토대로 다섯 가지 판단기준에 의거해 뉴스 포털의 책임여부를 심사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첫 번째 판단기준은 ‘문제가 된 표현의 맥락과 내용(context and content of the impugned comments)’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가 된 댓글들이 부동산 회사의 비윤리적인 사업 방식을 비판하는 공익적 내용이었으며, 그 댓글들처럼 저속하고 공격적인 표현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흔한 커뮤니케이션(common communication)’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표현의 맥락과 내용을 검토했을 때 문제가 된 표현의 부정적 영향력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판단기준은 ‘표현 작성자의 책임(liability of the authors of the comments)’이었다. 앞서 헝가리 법원은 익명의 글 작성자들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표현의 배포자인 포털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포털 사업자들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배포하였다(disseminated)’는 점을 수궁하더라도 포털 사업자



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용자들이 포스팅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의 행위를 ‘저널리즘 행위(journalistic activity)’로 보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타인에 의해 작성된 명예훼손적 표현을 배포한 것에 대해 포털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인터뷰하여 이를 전파한 저널리스트를 처벌하는 것은 공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선례<sup>14)</sup>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명예훼손적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처벌하는 것과 명예훼손적 발언을 배포한 포털을 처벌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세 번째 판단기준은 ‘포털이 행한 조치와 피해자의 행동(measures taken by the applicants and the conduct of the injured party)’으로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뉴스 포털과 MTE가 이용자들의 위법한 표현을 금지하는 경고문이나 계약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헝가리 법원은 포털 사업자가 필터링 되지 않은 표현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이용자들의

14) Jersild v. Denmark, September 23, 1994, Application No. 15890/89 등 일련의 선례 참조.

법 위반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헝가리 법원의 견해는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보낼 권리(freedom of the right to impart information on the Internet)’를 제한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문제가 된 표현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청구했다는 점도 포털의 책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판단기준은 ‘피해자에 대한 표현의 영향(consequences of the comments for the injured party)’이다. 당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었으며, 그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는 이미 공론화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온라인상의 비판적 댓글들이 다른 소비자들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신청인(포털)에 대한 영향(consequences for the applicants)’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포털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시키는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Delfi 판결에서 언급되었듯이 ‘통지 후 삭제 시스템(notice and take-down system)’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다만 뉴스 포털들은 혐오표현이나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표현처럼 명백히 불법적인 표현에 대해 ‘통지를 받았을 때는 물론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섯 가지 판단기준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뉴스 포털에게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한 헝가리 법원의 판결은 포털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유럽인권재판소의 Delfi와 MTE 판결은 뉴스 포털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책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통지 후 삭제 시스템’이 포털 사업자들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기준으로서 적절하다고 인정한 점은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뉴스 포털의 법적 책임의 판단기준을 고민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MTE 판결은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초래하는 표현 외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포털이 문제가 된 댓글이나 표현을 신속하게 삭제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가 MTE 판결에서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초래하는 표현에 대해 ‘통지가 있을 때는 물론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도 포털 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초래하는 표현인지 여부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법률 전문가가 아닌 포털 사업자들이 이를 미리 판단하고 삭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는 포털에 의한 과도한 게시물 삭제나 검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와 우리 법원의 판례를 비교해볼 때, 대법원은 포털이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존재함을 정황상 알 수 있었다면 삭제 요청이 없었더라도 포털에게 삭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반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아닌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초래하는 표현으로 한정하여 요청 없는 삭제의무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도 뉴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설령 포털의 뉴스 배치에 알고리즘이 개입되었더라도 판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알고리즘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의 이데올로기와 뉴스 선별에 대한 가치가 담겨져 있으므로 알고리즘은 가치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sup>15)</sup> 결국 사람의 손을 거치든 알고리즘을 거치든 뉴스를 선별하고 배치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할 때 그 사업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적절한 정도의 책임을 부담시켜 온라인 공론장이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판단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5) 오세욱·이재현, 2013, “소프트웨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분석: 행위자 네트워크 관점”, 『언론과 사회』 제21-1호, 152쪽.